

조

점

WTO체제의 조직과 기능

-홍보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출범은 국제무역에 있어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가 실현되고 이를 감시하는 강력한 국제기구가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시장에서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선진국이 수입장벽 수단으로 악용해 온 각종 회색조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그 동안 자유무역체제의 규율을 받지 않았던 분야인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섬유 등에 대한 자유무역규범이 마련되고 모든 영역에서 무역장벽이 대폭 완화될 것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가 설치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가 갖추어짐으로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고에선 올해부터 출범하는 WTO의 조직과 기본 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WTO체제의 개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범한 GATT가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세계 경제발전과 무역자유화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각국간 무역 불균형 심화, 지역 경제블록의 강화, GATT 원칙을 우회하는 각종 무역규제 조치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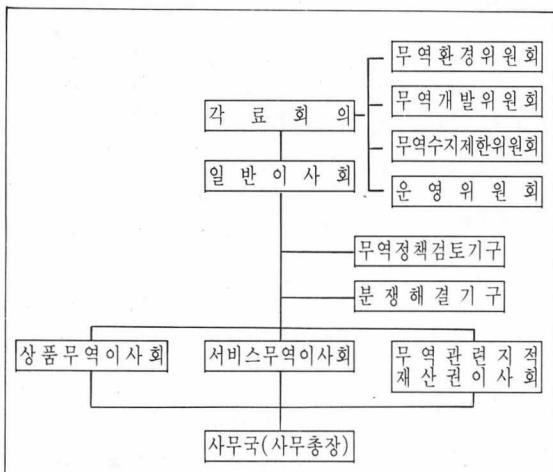
예를 들면 미국의 재정적자, 일본의 흑자누적, 개도국의 외채문제 발생, 유럽 통합, NAFTA 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금융, 유통, 통신, 수송 등 서비스 무역이 전교역량의 22%로 급증하였으며 첨단 기술상품의 무역증대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마찰이 빈발함에 따라 서비스, 농산물,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포괄하고 GATT체제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 무역규범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에

스테」 각료선언을 통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개시하여 1993년 12월 15일 117개국이 제네바에서 WTO체제의 출범을 위한 각종 협정문을 채택하고 WTO출범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여 마침내 1994년 12월 8일 WTO 출범일을 올해 1월 1일로 결정하게 되었다.

2. WTO체제의 구성

향후 WTO협정의 운영과 다자간 협상을 주관하게 될 세계무역기구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상품무역 이사회, 서비스무역 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 WTO 기구도

1) 각료회의 : 최고 의결기관으로 격년마다 개최하며, 각료회의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무역수지제한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일반이사회 :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각료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분쟁해결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통합하고 일방적인 무역 보복을 막으면서도 분야별 교차보복을 인정해 WTO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무역정책검토기구의 기능(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해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각국의 무역관련법과 제도 및 정책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처음으로 GATT에서 무역정책에 대해 검토를 받았으며, 오는 1996년에 다시 검토받게 된다.)도 수행하며 산하에는 상품무역 이사회, 서비스무역 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를 설치하였다.

3. WTO 설립 협정문

WTO 설립 협정문은 전문과 16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부속서에는 UR협상 결과인 다자간무역 협정 및 다각적무역협정을 포함하며 다자간무역 협정은 WTO설립 협정 가입과 동시에 WTO에 자동가입되므로 UR협정 결과 모두를 포함한다.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협약들은 ‘자유화 관련협약’과 ‘제도 관련협약’으로 자유화 관련협약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농업협정 등 해당분야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 관련협약은 지적재산권협정, 투자조치협정, 무역정책 검토제도,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등 교역 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

4. GATT/WTO체제의 기본 원칙

1) 최혜국 대우원칙(GATT 제1조)

특정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

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WTO의 핵심원칙)과 내국인, 외국인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최혜국 대우 일탈 목록으로 분류하여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며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서는 무조건 적용하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는 구체적 약속을 국별양허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시장접근 보장(GATT 제5, 11, 13조)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다. 이것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는 국별양허표에 구체적인 시장접근 범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명성의 원칙(GATT 제10조)

각국의 행정·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 적용·제도 운용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에 관한 협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5. 농업에 관한 협정

1) 농산물 시장접근분야

수입쿼터와 같이 수입을 제한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대신에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차이 만큼 관세로 부과하여 국내 농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한다.(예외없는 관세화)

선진국의 경우는 협정 발효후 6년 동안에 품목 별로는 최저 15%, 평균 36% 이상 관세를 감축

하며 개도국의 경우는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에 품목별로 최저 10%, 평균 24% 이상 관세를 감축한다.(관세의 단계적 감축)

{	선진국(6년 평균) : 미국 38%, 일본 36%, EU 37%, 캐나다 38%, 호주 45%, 스위스 39%
	개도국(10년 평균) : 한국 26.7%, 인도네시아 33%, 칠레 27%, 필리핀 30%, 말레이지아 28%, 태국 24%

기준연도('86~'88)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의 3% 미만인 농산물은 이행기간(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 동안에 3~5%의 물량 또는 현행수입 물량을 수입하고 최소시장 개방물량 또는 현행 수입량을 초과해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차이 만큼 혹은 그에 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최소시장접근 및 현행 시장접근에 의한 수입기회 보장)

2) 국내보조금 분야

국내 보조금분야의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허용보조금과 감축보조금으로 나누어 진다.

허용보조금은 연구사업 및 병충해 방제 등 정부의 일반서비스, 생산감축과 소득안정 목적의 보조, 지역개발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보조 등이고 감축보조금은 허용되는 보조 이외의 국내 보조금은 6년 동안에 20%를 감축하되,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출보조금 분야

수출 농산물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은 6년 동

〈표 1〉 주요품목의 시장 접근 내용

	관세양허(%)		시장접근 약속물량(톤)		
	기준세율	양허세율	초기년도	최종년도	이행기간
쌀	미제시	미제시	51,307(5%)	102,614(5%)	1995~1999
보리(쌀보리)	333 또는 410원/kg	299.7 또는 361원/kg	102,614(5%)	205,228(5%)	2000~2004
대두	541 또는 1,062원/kg	487 또는 956원/kg	14,150(20%)	23,582(20%)	1995~2004
옥수수(사료용)	365	328	1,032,152(5%)	1,032,152(5%)	〃
감자	338	304	6,102,100(3%)	6,102,100(1.8%)	〃
고구마	428 또는 375원/kg	385 또는 338원/kg	11,286(30%)	18,810(30%)	〃
쇠고기	44.5	40	11,121(20%)	18,535(20%)	〃
돼지고기(냉동)	37	25	123,000(43.6%)	225,000(41.6%)	1995~2000
닭고기	35	20	21,930(25%)	18,275(25%)	1995~1997.6
유제품(탈지분유)	220	176	7,700(20%)	6,500(20%)	1995~1997.6
고추	300 또는 6,900원/kg	270 또는 6,210원/kg	621(20%)	1,034(20%)	1995~2004
마늘	400 또는 2,000원/kg	360 또는 1,800원/kg	4,311(50%)	7,185(50%)	〃
양파	150 또는 200원/kg	135 또는 180원/kg	8,680(50%)	14,467(50%)	〃
오렌지	99	50	12,369(50%)	20,645(50%)	〃
참깨	700 또는 7,400원/kg	630 또는 6,660원/kg	15,000(50%)	57,017(50%)	〃
			6,731(40%)	6,731(40%)	〃

* 시장접근 약속물량란의 ()는 동 물량 수입시 적용되는 할당 관세율임.

〈표 2〉 연도별 돼지고기 수입쿼터량

구분	94년	95년	96년	97.1.1~ 97.6.30	'97년 7월 이후
수입 냉장육	개방	-	-	-	완전개방
물량 냉동육(톤)		21,930	29,240	18,275	
양허 관세(%)	25	37.0	35.8	34.6	33.4

안에 금액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하되, 개도국은 10년간 각각 24%, 14%를 감축하여야 한다.

4) 우리 나라의 양허내용

우리 나라의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를 확보하여 2004년까지는 관세화를 유예하고 최소의 물량만 도입하기로 하였다.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및 오렌지 등 3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97년 7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하였다(〈표 1〉 참조).

돼지고기의 경우 '97년 6월 30일까지는 국내 소비량의 3~5%를 수입하고 '97년 7월 이후에는 전면 개방이 된다(〈표 2〉 참조).

6. 결 론

세계무역질서의 흐름속에서 각국의 개방화·국제화가 가속화 될 것인 바, 그에 따른 혜택을 국가·기업·개인 할 것 없이 경쟁력을 갖추고 개방체계의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국가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개방에 불만은 있겠지만 우리가 UR협상에서 탈퇴하지 않고 농산물 협상에서 타결된 협상결과에 대해 보다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제는 어떤 부문을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부문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 생각만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할 때 대외지향적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경제로서는 WTO 체제에 동참하여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